

재활보조기구 관련 실무회의 결과

1. 회의 개요

- 목적: 재활사업으로 시행 중인 직무지원형 재활보조기구 운영실태 확인 및 시범 요양급여(이하 요양급여) 수가 개발 협의
- 일시: 2016.7.21.(목) 14:00~16:00
- 장소: 재활공학연구소 2층 회의실
- 참석 대상: 13명
 - (재활수가개발 TF팀) 안정남 차장, 김진용 과장, 강윤실 대리
 - (인천병원) 이자호 재활전문센터장, 경영기획부 조민정 차장, 최인덕 과장
 - (재활공학연구소) 류제청 부소장, 김신기 연구실장, 송점식 상용화기술지원센터장, 권영진 제작실장, 전지식 운영지원부장, 조현영 과장, 강성재 연구원, 오혜정 연구원

2. 주요 논의 결과

가. 직무지원형 재활보조기구 대상자

- (재활사업) 요양 종결한 장애등급 제12급 이상의 장애인에게 고용촉진형¹⁾과 고용유지형²⁾으로 구분하여 지급

※ 고용촉진형: 10%, 고용유지형: 90%

<직무지원형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자>

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 대하여 지급

1. 요양 종결한 산재 장애인(장애등급 제1급~제12급)
2. 산재장애인 중 직업을 가진 자
3. 산재장애인 중 절단 및 마비장애인, 보조기구 해당 사용자

1) 고용촉진형: 신규 발생 산재근로자의 원직복귀 촉진 및 조기 사회복귀에 필요한 재활보조기구

2) 고용유지형: 재직 중인 산재근로자의 직무수행 능력 향상과 계속 고용 유지에 필요한 재활보조기구

○ (요양급여) 산재환자의 조기 직장복귀를 유도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재활사업의 지급 대상자를 그대로 적용

- 최초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자가 직무지원형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지원형 재활보조기구를 지급

※ 직무지원형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자가 이직 또는 무직이 될 수 있으므로 직장 복귀가 확정된 대상으로 한정('14년 지급 대상자 124명 중 현직 106명(85.5%), 이직 7명(5.6%), 무직 11명(8.9%): '15년 재활공학연구소 설문조사)

- 직무지원형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시스템 강화 및 기존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자와 직무지원형 재활보조기구 중복 지급에 대한 적용방안 마련 필요

※ 직장복귀가 불확실한 요양 중인 산재환자의 재활보조기구는 현행과 같이 유지

나. 직무지원형 재활보조기구 수가 개발 방안

○ (재활사업) 직무지원형 재활보조기구 품목별 재료비만 산정

○ (요양급여) 재활보조기구 품목별 산정기준과 기준금액 적용방안과 부품 코드별 적용방안을 구체화하여 추가 논의

<직무지원형 재활보조기구 수가개발 방안>

구분	세부 내용
품목별 지급기준	- (내용) 품목별 산정기준과 기준금액에 따라 지급 - (장점) 표준화된 지급기준에 따른 청구 및 지급 업무 용이, 기준금액에 인건비, 재료비, 경비 포함 가능 - (단점) 품목별 산정기준과 기준금액의 제한으로 대상자의 특수한 상태의 직무지원형 재활보조기구 지급 한계 - (보완) 특수 형태의 고가의 재활보조기구 지급방안 마련 (사례별 고용노동부 승인)
코드별 지급기준	- (내용) 재활보조기구 부품 코드별로 기준금액을 마련하고 선정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에게 적합한 재활보조기구 결정 - (장점) 대상자의 상태 및 직무특성에 적합한 재활보조기구 지급 가능 - (단점) 부품 코드별 구분에 따른 청구 및 지급 복잡, 대상자 선정, 직무분석 및 재활보조기구 지급, 사후관리 등에 대한 보상 곤란